

8. 韓國住宅銀行法廢止法律

법률 제5,403호 1997. 8. 30

주요골자

- 가. 한국주택은행법을 폐지하고, 한국주택은행을 동 폐지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본문 및 부칙 제2조).
- 나.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주택은행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계속 영위하도록 하고, 동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은행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등은 동 폐지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함(법 부칙 제4조).
- 다. 폐지법률의 시행일 현재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부칙 제6조).
- 라. 민영화 이후에도 주택금융 취급비율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여 일정수준의 주택금융공급기능을 유지하도록 함(법 부칙 제7조).
- 마.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 중에서 인용한 한국주택은행은 민영화에도 계속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함(법 부칙 제8조).

개정이유

개방화·자율화의 추세에 따른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1967년 서민주택자금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특수은행으로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을 상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상업은행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책은행으로서의 자금조달 및 운용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민간자율경영에 의한 생산성제고와 능률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주택은행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주식회사로의 전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이하 “폐지은행”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자본금과 주주를 각각 자본과 주주로 하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신설은행”이라 한다)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신설은행의 은행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정관을 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설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대하여 은행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는 때에는 자체 없이 주식회사로의 전환에 따른 설립 등기와 폐지은행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317조제2항 각호의 사항과 이 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해산되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3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 신설은행은 폐지은행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 신설은행이 폐지은행으로부터 승계

한 재산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폐지은행의 명의는 신설은행의 명의로 본다.

- 제 4 조(은행의 업무) ①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폐지은행이 이 법 시행당시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신설은행이 이를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
- ② 신설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③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폐지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신설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 5 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폐지은행의 임원은 상법 및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은행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되,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② 이 법 시행당시의 폐지은행의 직원

은 신설은행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된다.

제 6 조(주택채권의 발행) 신설은행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발행된 주택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 7 조(주택자금의 공급) ① 신설은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은행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제3호의 권한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말한다)는 은행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급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②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도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바목을 삭제한다.

③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 한다.

④ 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의2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⑤ 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⑥ 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⑦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을 삭제한다.

⑧ 예금자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⑨ 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 한다.

⑩ 이 법 시행당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폐지은행 또는 그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신설은행 또는 그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